

의안번호	제 114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1월 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

제출연월일 : 2019년 1월 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신설 및 제7조의6(특별휴가)의 개정 등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돌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조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삭제 또는 개정하고
- 시행령 제7조의6제6항(모성보호시간) 및 제7항(육아시간)의 시행범위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특별휴가) 제1항
 -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 및 충돌조항 삭제
 - 제9조, 제15조제5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7항과 제11항
- 근무기강 확립 조항 신설 (제5조 제1항)
 -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준수, 근무기강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 근무 중 복장착용에 관한 조항 신설 (제13조 제1항)
 -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함
-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어로 개정 (제17조 제1항)
 - 일본식 한자어 “지참”을 순화어인 “지각”으로 개정
- 육아시간 허가범위 및 계산방법 조항 개정 (제18조 제12항)
 - 허가범위 :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
 - 계산방법 : 사용한 날 기준 1일, 2시간 미만이라도 1일공제 등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조건 조항 신설 (제18조 제13항)

- 일(日) 최소근무시간 4시간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은 3시간이상)이 되어야 하고
-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으며, 당일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7조의3제2항”을 “제7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7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시행령 제7조의6제7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제18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별표 3의 대민관계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별표 3의 대내관계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별표 4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2일 가산
-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 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 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 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9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 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 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 서는 아니 된다.</p> <p>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 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 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 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 시를 받아야 한다.</p> <p>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 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 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p>	<p>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p> <p>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p>
<p>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p> <p>①~④생략</p> <p>⑤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p>	<p>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p> <p>①~④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p>	<p>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다.</p> <p>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 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 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 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 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 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 다.</p> <p>○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p>	<p><삭 제></p>
<p>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 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 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찰</u>·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p>	<p>제17조(병가) ① ----- --- <u>지각</u> ----- -----.</p>

현행	개정안
<p>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3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제18조(특별휴가) ① ----- ----- 제7조의6제2항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④ ----- -----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청구할 수 없다.</p> <p>⑧~⑩ 생략</p> <p>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⑫ 만 5세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⑧~⑩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⑫ 시행령 제7조의6제7항에 의거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p>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p>

현행	개정안
	<p>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제8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7조의6(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